

객원교원 임용 규정

제 정 : 2005. 8. 16.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5. 8. 1.
개 정 : 2018. 8. 31.
개 정 : 2025.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금강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객원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객원교원 임용대상자는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국내외 사회 저명인사로 한다.

제3조(직위) 객원교원의 직위는 객원교수로 한다.

제4조(임용기간) 객원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을 포함하여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임용절차) ① 객원교원은 근무할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객원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임용 1개월 이전까지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1. 이력서
2.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

제6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객원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임용기간 중 해교 행위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보수) 객원교원의 정규강좌에 대한 수업 또는 특강에 대한 강의료는 시간강사 급여책정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출강료 및 특강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